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진성준ㆍ허 영ㆍ민병덕

이연희 • 박상혁 • 김윤덕

위성곤・황정아・조 국

김 윤ㆍ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에는 운영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이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 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재정법」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립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조직에"를 "조직과 운영에"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를 "위원회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② (생 략)	독립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정부는 위원회의 예산을 편
	<u>성할 때 「국가재정법」 제40</u>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립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u>본다.</u>
<u><신 설></u>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을 추천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
	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
	<u>로 정한다.</u>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	
원회의 <u>조직에</u> 관하여 필요한	<u>조직과 운영에</u>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	위원회 규칙으로

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삭 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